

문서번호	마을담당관-6897
결재일자	2015. 10. 5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주민참여담당	마을담당관			
협 조	예산담당				

주민참여예산제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
예산 변경 및 전용 계획

2015. 10.

마을담당관

주민참여예산제 주민총회 개최를 위한 **예산 변경 및 전용 계획**

2015년 예산편성 후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의 성격에 맞게 예산을 변경 및 전용하고자 함.

I 추진근거

-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기준(예산의 변경 및 전용)
-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(예산의 전용)

II 추진사유

- 성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타보상금을 편성하여 전체회의나 주민총회에 참석한 참여예산위원들에 참석수당을 지급하였으나,
- 기존 현장투표만 진행하던 주민총회를 주민참여예산위원과 다양한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총회 상정 사업에 대해 토론하고 투표하는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운영하고자,
- 일반보상금(기타보상금)으로 편성하였던 예산을 사업취지에 맞게 일반보상금(행사실비보상금)으로 변경 및 일반운영비(행사운영비)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

III 변경 및 전용 계획

■ 변경 및 전용금액 : 5,870천원

■ 변경 및 전용내역

(단위:천원)

구분	예산 과 목				예산액	전용 및 변경 요구액		전용 후 예산	비고
	단위사업	세부사업	편성목	통계목		증	감		
변경 및 전용전	마을 민주주의 체계 구축	주민참여 예산제 운영	일반보상금	기타보상금 (301-11)	12,860		△5,870	6,990	
변경 및 전용후	마을 민주주의 체계 구축	주민참여 예산제 운영	일반보상금	행사실비 보상금 (301-09)	-	3,150		3,150	변경
	마을 민주주의 체계 구축	주민참여 예산제 운영	일반운영비	행사운영비 (201-03)	25,500	2,720		28,220	전용

- 붙임 1. 예산 변경 및 전용 요구서 1부.
 2. 제안요구서 1부. 끝.